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14. 10. 1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9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9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(2014년 9월 25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 : 복지국장 김찬재)

가. 제안이유

❍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일반회계에 편입되었던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함

나. 주요내용

❍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조)

❍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
❍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종류 (안 제5~6조)

❍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리기준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태선)

❍ 본 조례안은 무단투기에 따른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❍ 주요내용을 보면

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과, 사업의 범위, 세입 및 세출사항, 일시차입 및 잉여금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.

❍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,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·세출로서 일반 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,

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동법 제9조제3항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규정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제정되어 있는 등 본 조례의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❍ 그러나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·출입은 자치단체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, 수년간에 걸쳐 특정 특별회계로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입방안,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, 시행시기의 적정성 여부 등의 검토와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임.

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회계로서,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 10 호

제출연월일 : 2014. 9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일반회계에 편입되었던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청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조)

나.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
다.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종류 (안 제5~6조)

라.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리기준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

나. 예산조치 : 예산조치 필요

다. 협의사항

(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2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14.8.7~8.27, 20일간)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(이하 "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,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 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」 제7조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3조(사업의 범위) 이 조례를 적용받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은 무단투기자 단속을 위한 인원 채용 및 관리,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, 무단투기 방지시설물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.

제4조(관리·운영) 회계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관리·운영한다.

제5조(세입)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.

1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조례」 제33조 〔별표5〕의 무단투기 과태료
2. 일반회계 전입금
3. 그 밖에 회계운영에 따른 수입금 등

제6조(세출)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.

1.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사업 관련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
2.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비
3.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시설비(CCTV, 간판 등)
4. 그 밖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에 필요한 사업비

제7조(일시차입)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

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.

제8조(잉여금의 처리)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.

제9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.

제10조(보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5조에 따른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 부터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1. 2013년 12월 31일까지 징수결정분 중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.
2. 2014년도 징수결정분 중 2015년 2월 28일까지의 수입분은 일반회계로 하고, 2015년 3월 1일 이후의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.